

#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

- 변경전 :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- 변경후 : 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투자신탁(H)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환헤지 전략 추가에 따른 펀드명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파생상품 추가, 취득한도 조정 등
- 모투자신탁 환헤지 전략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. 08. 16

4. 대비표

**[집합투자규약]**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b>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b>	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 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투자신탁[재간접형]"으로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은 혼합자산 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 투자신탁(H)[재간접형]"으로 한다.
<b>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	제 1 항 <추가>  제 2 항 <추가>	제 1 항 <u>3. 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. 다만,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.(이하 "파생상품"이라 한다)</u>  제 2 항 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u> <u>4.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</u>
<b>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b>	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한다.	1. 제 3 조제 4 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80%</u> 이상으로 한다

	<p>2.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의 범위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 <p>&lt;추가&gt;</p>	<p>2. 제 17 조제 2 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20%</u>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</u>이하의 범위내에서 <u>20%</u>를 초과할 수 있다.</p> <p>3. <u>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</u></p>
<p><b>제 19 조(운용 및 투자제한)</b></p>	<p>&lt;추가&gt;</p>	<p>2. <u>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3. <u>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4. <u>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u></p>
<p><b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b></p>	<p>&lt;추가&gt;</p>	<p><u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제 3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1. <u>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</u></p> <p>2. <u>투자신탁의 일부해지</u></p> <p>3. <u>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</u></p>

		<p>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</p> <p>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</p>
--	--	--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p>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/p>	<p>[1] 투자전략</p> <p>2. 투자전략</p> <p>[모투자신탁에의 투자]</p> <p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 - 투자비율 : 90% 이상</p>	<p>[1] 투자전략</p> <p>2. 투자전략</p> <p>[모투자신탁에의 투자]</p> <p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 - 투자비율 : <u>80%</u> 이상</p>
<p>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</p>	<p>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</p> <p>2. 위험등급</p> <p>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%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(이하 생략)</p> <p>3. 위험관리</p> <p>이 자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)에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합니다.</p>	<p>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</p> <p>2. 위험등급</p> <p>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<u>80%</u>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</p> <p>3. 위험관리</p> <p>- <u>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.</u></p> <p>- <u>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- <u>목표 헤지비율 : 외화표시자산(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</u></p>

		<p>집합투자증권)의 90% 수준</p> <p>-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,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,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혜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.</p>
--	--	--

**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**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<p>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</p> <p>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 투자신탁[재간접형]</p>	<p>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</p> <p>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(H)[재간접형]</p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p>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</p> <p>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 투자신탁[재간접형]</p>	<p><b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</b></p> <p>하나 UBS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자투자신탁(H)[재간접형]</p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p><b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b></p> <p>&lt;추가&gt;</p>	<p><b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b></p> <p>2018 년 08 월 16 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혜지 전략 추가에 따른 펀드명 변경 및 투자대상자산 파생상품 추가, 취득한도 조정 등</li> <li>- 모투자신탁 환혜지 전략 삭제</li> </ul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p><b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b></p> <p>(생략)</p>	<p><b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b></p> <p>(업데이트)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</p>	<p><b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b></p> <p>다. 모자형 구조</p> <p>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'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'에 신탁재산의 90%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008080; color: white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대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[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</b></p> <p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</p> <p>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헤지 실행</li> </ul>	투자대상	투자비율	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90% 이상	<p><b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b></p> <p>다. 모자형 구조</p> <p>이 투자신탁은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'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'에 신탁재산의 <u>80%</u>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008080; color: white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대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0%</u>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[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</b></p> <p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</p> <p>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: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,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등</li> </ul>	투자대상	투자비율	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<u>80%</u> 이상				
	투자대상	투자비율												
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90% 이상													
투자대상	투자비율													
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<u>80%</u> 이상					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</p>	<p><b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b></p> <p>가. 자집합투자기구</p> <p>(1) 투자대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008080; color: white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대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비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대상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0%이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글로벌 채권 (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)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 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용	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90%이상	글로벌 채권 (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)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 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	<p><b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b></p> <p>가. 자집합투자기구</p> <p>(1) 투자대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008080; color: white;"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대상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비율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자대상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0%이상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글로벌 채권 (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)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 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용	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<u>80%이상</u>	글로벌 채권 (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)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 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용												
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90%이상	글로벌 채권 (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)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 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												
투자대상	투자비율	투자대상 내용												
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	<u>80%이상</u>	글로벌 채권 (하이일드 및 전환사채 포함)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 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												

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386 313 561 409"></td> <td data-bbox="561 313 671 409"></td> <td data-bbox="671 313 880 409">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86 409 561 813">유동성자산</td> <td data-bbox="561 409 671 813">10%이하 (단,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%이내)</td> <td data-bbox="671 409 880 813">-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- 금융기관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)</td> </tr> </table>			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	유동성자산	10%이하 (단,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%이내)	-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- 금융기관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)	<table border="1"> <tr> <td data-bbox="880 313 1056 409"></td> <td data-bbox="1056 313 1166 409"></td> <td data-bbox="1166 313 1418 409">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80 409 1056 1171">유동성자산</td> <td data-bbox="1056 409 1166 1171">20%이하 (단,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%이내)</td> <td data-bbox="1166 409 1418 1171">-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- 금융기관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) <u>- 환매조건부매수 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u> <u>-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</u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880 1171 1056 1619">파생상품</td> <td data-bbox="1056 1171 1166 1619">10% 이하 (위험평가액 기준)</td> <td data-bbox="1166 1171 1418 1619"><u>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.</u> <u>다만,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.</u></td> </tr> </table>			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	유동성자산	20%이하 (단,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%이내)	-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- 금융기관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) <u>- 환매조건부매수 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u> <u>-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</u>	파생상품	10% 이하 (위험평가액 기준)	<u>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.</u> <u>다만,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.</u>
		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
유동성자산	10%이하 (단,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%이내)	-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- 금융기관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)															
		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															
유동성자산	20%이하 (단,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%이내)	- 단기대출 (30 일 이내의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) - 금융기관 예치(만기 1 년 이내인 상품) <u>- 환매조건부매수 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)</u> <u>-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</u>															
파생상품	10% 이하 (위험평가액 기준)	<u>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.</u> <u>다만,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에 한한다.</u>															
	(2) 투자제한 <내용 추가>	<p>(2) 투자제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880 1709 1002 1760">구분</th> <th data-bbox="1002 1709 1418 1760"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880 1760 1002 1933">파생상품</td> <td data-bbox="1002 1760 1418 1933"><u>-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파생상품	<u>-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</u>											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
파생상품	<u>-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</u>																

		<p><u>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- <u>같은 거래상대방과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u></p> <p>- <u>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</u></p> <p>※ <u>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 18 조제 3 호,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3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</u></li> <li><u>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</u></li> <li><u>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</u></li> <li><u>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</u></li> <li><u>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</u></li> </ol>
--	--	---

제 2 부  
집합투자기  
구 에 관한 사항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가. 투자전략

투자 대상	투자 비율
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 투자신탁[재간접형]	90% 이상
유동성자산(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)	10% 이하

※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% 이내의 범위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
나. 위험관리

이 자투자신탁에서는 환헷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)에서 환헷지 전략을 실행합니다.
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

가. 투자전략

투자 대상	투자 비율
하나 UBS PIMCO 글로벌인컴혼합자산모 투자신탁[재간접형]	80% 이상
유동성자산(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, 환매조건부매수 등)	20% 이하

※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40% 이내의 범위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
나. 위험관리

-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헷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.

-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
- 목표 헷지비율 : 외화표시자산(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)의 90% 수준

-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,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,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헷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

	<p><b>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]</b></p> <p>나. 위험관리</p> <p>(2) 환헷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의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해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.</li> <li>-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미국달러 이외의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미국달러와 해당 통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</li> <li>- 목표 헤지비율 : 외화표시자산의 90% 수준</li> <li>-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,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, 해지가 빈번하다는</li> </ul>	<p><u>없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.</u></p> <p><u>※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.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(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)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b>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등]</b></p> <p>나. 위험관리</p> <p><u>환헷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되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.</u></p>
--	--	---

	<p>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 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 등이 남게 됩니다.</p> <p>※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.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(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)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	
<p><b>제 2 부</b> <b>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</p>	<p><b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b>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%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(생략)</p>	<p><b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b>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, 주택저당증권(MBS), 자산유동화증권(ABS) 등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<u>80%</u>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(생략, 현행과 동일)</p>
<p><b>제 4 부</b> <b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</p>	<p><b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b>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</p>	<p><b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b>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</p>

